

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10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0. 5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10. 11

(제124회 화순군의회의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무과장 허길중

나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단체가 각종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 표준면적을 산출하여 시달함에 따라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를 규정하여 최적의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으로 정함. (안 제47조)
- 청사설계의 적합성
 - 행정수요·기구·인력의 증·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
 - 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
 -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·수직으로 설계
 -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
 - 냉·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
 -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
 -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용태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7조에 의한 청사설계의 적합성에 대한 기준 및 규모를 적절하게 규정하여 최소의 경비로 청사환경을 조성하도록 설계기준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,
-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 의결”

7. 붙임 :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7조(청사 등의 설계) 청사·종합회관 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행정수요·기구·인력의 증·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
2.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
3.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·수직으로 설계
4.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
5. 냉·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
6.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
7.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